#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17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권향엽·윤종군·이병진

소병훈・이재강・서영석

안태준 • 조계원 • 조인철

박용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 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지적한바 있으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 여도 정하며,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제3조, 제13조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 나.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15조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통신이용자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이용자의 성명
  -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다. 이용자의 주소
  -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 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의"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이라 한 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이라 한다)의"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신 사실확인자료를"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 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요청사실"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의 제공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공한 때에는" 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사실등"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제공요청서등"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를 "통 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공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7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4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으로 한다.

제13조의5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사용제한"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매 분기별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3호, 제3조, 제13조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 第2條(定義)                |
|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13. "통신이용자정보"라 함은      |
|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전기통신이용자에 관         |
|                       | 한 자료를 말한다.             |
|                       | <u>가. 이용자의 성명</u>      |
|                       |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                       | <u>다. 이용자의 주소</u>      |
|                       |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
|                       | <u>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u> |
|                       | 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          |
|                       | 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
|                       |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
|                       | <u>말한다)</u>            |
|                       |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       |
|                       | <u>지일</u>              |
|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
| ① 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      | ①                      |
| 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                        |
|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                        |
| 검열·전기통신의 <u>감청 또는</u> | <u>감청 · 통신사</u>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 5. (생략)
- ② · ③ (생 략)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사</u> 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 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u>통신</u>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 출(이하 "<u>통신사실</u> 확인자료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 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통</u>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 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

| <u>실확인자료 또는 동신이용자성</u>   |
|--------------------------|
| <u> </u>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사</u> |
| 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절차)          |
| ①                        |
|                          |
|                          |
|                          |
|                          |
|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          |
| 용자정보(이하 "통신사실확인          |
| <u> 자료등"이라 한다)의</u>      |
| <u>통신사실확인자</u>           |
| 료등의 제공                   |
|                          |
| ② (현행과 같음)               |
| ③ <u>통</u>               |
| 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

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 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u>통신사실</u> 확 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u>통신사실확인자료를</u> 제 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 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u>통신사</u> 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3항에 따라 <u>통신사실</u>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u>통신</u>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u>통신사실</u>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 <u>통신사실</u>      |
|------------------|
| 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
| <u>.</u>         |
| <b>4</b>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
|                  |
|                  |
| 통신               |
| 사실확인자료등을         |
|                  |
| ⑤                |
| 통신사실확인자료         |
| 등의 제공을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  |
| <u>청사실</u>       |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
| 의 제공요청서          |
| <u> </u>         |

-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 항에 따라 <u>통신사실 확인자료</u> 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 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 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 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 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 치하여야 한다.
- ⑧ (생 략)
-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사실</u>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u>통신사실확</u> 제 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 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

| 6                              |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                      |
| 의 제공                           |
|                                |
|                                |
| ⑦                              |
|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
| 제공한 때에는                        |
|                                |
| <u>통</u>                       |
| 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사실                 |
| <u> </u>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요청서등통신사실                       |
| 확인자료등을 제공한 날부터                 |
| ,                              |
| ⑧ (현행과 같음)                     |
| (9)                            |
| <u>통신사실확</u>                   |
| <u>인자료등의 제공</u>                |
|                                |
| <br>]13조의2(법원에의 <u>통</u> 신사실확  |
| 인자료등의 제공)                      |
| <u> 127   24 0 5   7 川 0</u> / |
|                                |

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사실확인자료제</u>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u>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 조에 따라 <u>통신사실</u>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u>통신사실</u>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u>통신사</u> 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1. · 2. (생략)
-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u>통</u>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 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 <u>통신사실확인자</u>                                |
|---|
| 료등의 제공  |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u>                     |
| <u>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u> 의 통                        |
| 지) ①  |
| <u>통신사실확인</u>                                 |
| <u> 자료등의 제공</u>                               |
|   |
| <u>통신사실</u>                                   |
| 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                                  |
| <u> </u>                                      |
|   |
| 1. • 2. (현행과 같음)                              |
| 3 <u></u>                                     |
| 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D) ~ (H) |
| <i>⊎</i>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u>통신사실</u>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 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통신사실</u>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u>통신</u> 저 <u>사실 확인자료제공</u>의 절차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을 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
| 의 제공                      |
|                           |
|                           |
| 6                         |
|                           |
|                           |
|                           |
|                           |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u>      |
|                           |
|                           |
| ⑦                         |
| <u>통</u> 신사실확인            |
| 자료등의 제공                   |
|                           |
| <u>.</u>                  |
| ∥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u>통신</u> |
| 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절차           |
| 드) ①                      |
|                           |
|                           |
|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할 수 있다.

-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 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 ③ <u>통신사실확인자료</u>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 용한다.
-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생 략)
  -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

| ②                      |
|------------------------|
|                        |
| <u>통신사</u>             |
| 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u>통</u>               |
| <u>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u>    |
|                        |
| ③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
|                        |
|                        |
| <br>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 |
| 의 사용 제한)               |
|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           |
| 공                      |
| —<br>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사실확인자료등의 사용제한          |
| ,                      |
|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
| (현행과 같음)               |
| <b>4</b>               |
|                        |

| 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정        | }          |
|------------------------|------------|
| 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        | <u>}</u>   |
|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 1          |
| <u>요구가 있는 경우</u> 대통령령ㅇ | ]          |
|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 .]         |
|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       | .]         |
|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이         | þ          |
|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정      | <u>}</u> - |
| 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        | 1          |
| 야 한다.                  |            |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 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 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 매 분기별로            |
|-------------------|
| <u>에 한기원도</u><br> |
|                   |
|                   |
|                   |
|                   |
| ·                 |
|                   |
|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 |
| 조의무) ①            |
|                   |
| <u>통신</u>         |
| 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
|                   |
| <u>통</u>          |
| 신사실확인자료등          |
|                   |
|                   |
| <br>제15조의3(시정명령)  |
|                   |

위반하여 <u>통신사실확인자료제</u> <u>공</u>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 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
|------|------------------|
| 의 제공 |                  |
|      |                  |
|      |                  |
|      |                  |
|      |                  |